영등포구의회 제197회 임시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 檢討報告書

【김용범 의원 발의】



2016. 10. 25.

行政委員會 專門委員 金民基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檢 計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159호로 2016년 10월 10일 김용범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16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종전에는 세입·세출결산서 및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하나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각각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함 (안 제3조제2항)
- 구청장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사용내역을 영등포구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안 제3조제4항)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129조, 제134조

「지방재정법」제43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제59조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문체계는 본문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영등포구청장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영등포구 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u>각각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u> 규정하고, (안 제3조제2항)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사용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함. (안 제3조제3항)

- 세입·세출결산안과 별도로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그동안 결산안에 부가적 으로 이루어졌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를 단독 안건으로 제출·심의하도록 하여 통과의례적인 심의가 아닌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 예비비를 집행한 경우 분기별로 사용내역을 소관 상임위 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예비비 지출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 특성상, 상시적인 통제를 받지 못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다소 보완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 고 자 료

### 1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 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 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1. 결산개요
- 2. 세입·세출결산
-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가. 재정상태표

- 나. 재정운영표
- 다. 순자산변동표
- 4. 성과보고서

# 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 51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u>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이를</u>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의2(결산서의 작성)** ①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 는 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예산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세입·세출결산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세입예산액
  - 나. 이체 등 증감액
  - 다. 세입예산 현액
  - 라. 징수결정액
  - 마. 수납액
  - 바. 불납결손액
  - 사. 미수납액
-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출예산액

사. 지출액

나. 전년도 이월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자. 집행잔액

- 라. 전용 등 증감액
- 마.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 바. 세출예산 현액